

서울특별시 마포구 풍수해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2023. 12. 11.
행정건설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3. 11. 17. 권영숙 의원 외 5명
- 나. 회부일자: 2023. 11. 20.
- 다. 상정일자: 제265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행정건설위원회(2023. 12. 4.)
상정, 심사, 의결

2. 제안설명요지 【제안설명자: 권영숙 의원】

가. 제안이유

자연재난으로 인하여 마포구민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구민의 피해에 대한 손해를 신속하게 보상하기 위하여 풍수해보험 가입 및 보험료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구민의 생활안정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동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임.

나. 주요내용

- 동 조례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안 제2조)
 - “풍수해”, “풍수해보험”, “보험료” 정의
- 지원계획 수립·시행(안 제3조)
 - 실태 조사·분석을 통한 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

- 풍수해보험료 지원 관련 구체적인 내용 규정(안 제4조~안 제9조)
 - 보험목적물(안 제4조), 지원대상(안 제5조), 보험료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6조), 지원한도(안 제7조), 보험가입 및 증명서류 제출(안 제8조) 등
- 환수조치(안 제10조)
 -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료 지원을 받을 경우 환수에 관한 사항
- 풍수해보험 가입 홍보(안 제11조)
 - 국민의 풍수해보험 가입을 위한 홍보 실시에 관한 사항

다.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자연재해대책법」 제3조제5항
 - 「풍수해 보험법」 제7조 및 시행령 제4조(보험료)
 - “2023년 풍수해보험사업 추진계획”(행정안전부)
- 입법예고: 2023. 8. 17. ~ 8. 21.(제출된 의견 없음)
- 예산조치: 비용추계서 미첨부

3. 검토보고(전문위원 유준상)

가. 본 조례안은 권영숙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5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하여 행정건설위원회로 회부된 조례안으로 자연재난으로 인하여 마포 구민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구민의 피해에 대한 손해를 신속하게 보상하기 위하여 풍수해보험 가입 및 보험료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구민의 생활안정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동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임.

나. 제정 취지(적정성/타당성)

- 풍수해보험은 정부 정책에 따라 시행 중인 「풍수해보험법」 제7조 「자연재해대책법」 제3조제5항에 따른 태풍, 홍수, 호수, 강풍, 대설, 지진 등 발생에 대하여 구민 스스로가 대처하는 동시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구민 재산피해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을 제공하기 위한 “정책” 성격의 보험제도라고 할 수 있음.
- 따라서 마포구민이 자연재난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재산 피해에 따른 손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풍수해보험” 가입 및 지급을 포함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구민 생활안정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임.

다. 지자체 조례제정 현황(14개)

- 서울시 동작구, 부산광역시 동래구, 연제구, 인천광역시 서구, 옹진군, 광주광역시 동구, 경기도 성남시, 광주시, 경상북도 김천시, 봉화군, 충청북도 단양군,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전라남도 영광군, 경상남도 고성군

라. 조항별 구성 및 내용

조 문	규 정 사 항	조 문	규 정 사 항
제1조	목 적	제7조	지원한도
제2조	정 의	제8조	보험가입 및 증명서류 제출
제3조	지원계획 수립·시행	제9조	보험료 지급방법 등
제4조	보험목적물	제10조	환수조치
제5조	지원대상	제11조	풍수해보험 가입 홍보
제6조	보험료 지원	제12조	시행규칙

- 안 제1조(목적)는 「풍수해보험법」에 따라 풍수해로 발생하는 재난 피해 손해를 신속하게 보상하기 위하여 “풍수해보험” 가입, 지급 등에 관련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신체·재산” 등 전반적인 국민 생활안정에 기여할 것이라고 판단됨.
- 안 제2조(정의)는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에 따라 “풍수해”, “풍수해보험”, “보험료” 정의를 구체화 함.
- 안 제3조(지원계획 수립·시행)는 매년(연간) 풍수해로 인한 피해상황에 대한 실태조사 및 분석을 통하여 적정한 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 풍수해 등 자연재난 피해규모에 따른 보험금 지급 건수 및 지원 금액 -

연 도	보상목적물주소(주택)	건	사고 원인	지급보험금(만원)
2016년	도화동	1	강풍(소파)	7.4
2017년	염리동	1	호우(침수)	120
2018년	망원동	1	호우(침수)	120
2019년	망원동	1	호우(침수)	120
2020년	서교동	1	호우(침수)	200
2021년	-	-	-	-
2022년	연남동	1	호우(침수)	977.8

- 안 제4조(보험목적물)에서는 「건축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과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사업장의 건축물과 시설물을 동 조례의 대상 보험목적물로 규정하였음.

○ 안 제5조(지원대상)는 동 조례 제4조에 해당하는 보험목적물을 대상으로 마포구에 주소를 둔 소유자와 세입자까지 보험 대상으로 규정하여 지원하고자 함.

- 마포구 2020~2022년 연도별 풍수해보험 가입 건수 -

※ 일반/차상위계층/기초생활수급자/취약지역 거주자로 구분하여 작성

연도	총 가입 수	일반가입자	차상위계층	취약지역 거주자	기초생활 수급자
2020년	52	29	1	0	22
2021년	46	39	1	1	5
2022년	58	51	1	0	6

- 2023년까지의 풍수해보험 누적가입 건수 -

총 가입 건수	주택	온실	소상공인
4,988건	103건	0건	4,885건

○ 안 제6조(보험료 지원)에서는 「풍수해 보험법」 제7조 및 시행령 제4조(보험료의 지원), “2023년 풍수해보험사업 추진계획”(행정안전부)에 근거하여 정부가 최소 70%를 지원하고, 가입자가 최대 30%까지 부담하도록 하여 자연재해·재난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마포구민의 일상생활 회복을 돕고자 함.

- 풍수해보험 지원 세부 내용 및 보험료 구성비 -
 (정부의 재정지원: 70%~100%, 가입자 자부담: 0%~30%)
 * 풍수해보험료 재정 구성: 국고+지방비+자부담

지원대상 구분	국 고	지방비	자부담
일반	56.5%	13.5%	30%
차상위계층	61.75%	15.75%	22.5%
	약 78.0%		
기초생활수급자	68.05%	18.45%	13.5%
	약 87.0%		
취약지역 내 취약계층	100.0%		0%

*) 일반지역 내 취약계층도 제3자 기부방식을 통하여 보험료 전액 지원이 가능함.

자료 : “2023년 풍수해보험사업 추진계획”(행정안전부), 최종 확인일: 2023.8.31

○ 안 제7조(지원한도)에서는 지원 금액 한도를 지원대상에 따라 제5조제1호에 해당하는 “직접 주거용 주택”에 대하여 10만원 이내로 한도를 한정하였으며, 제5조제2호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사업장의 건축물과 시설물”에 대하여 20만원 이내로 한도를 정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이는 마포구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적정 지원 금액 한도를 설정하여 구민 피해에 대하여는 최대한으로 지원하는 동시에 마포구 실정에 적합한 한도를 설정하고 지원예산을 마련하고자 함.

○ 안 제11조(풍수해보험 가입 홍보)의 해당 조항 규정에 따라 마포구는 더 많은 마포구민이 풍수해보험에 가입하여 풍수해로 인한 피해에 대비할 수 있도록 홍보해야 할 것임.

마. 종합 검토의견

- 풍수해보험은 정부 정책에 따라 시행 중인 「풍수해 보험법」 제7조 및 시행령 제4조(보험료), “2023년 풍수해보험사업 추진계획”(행정안전부), 「자연재해대책법」 제3조제5항에 따른 태풍, 홍수, 호수, 강풍, 대설, 지진 등 발생에 대하여 구민 스스로가 대처하는 동시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구민 재산피해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을 제공하기 위한 “정책” 성격의 보험제도라고 할 수 있음.
- 따라서 마포구민이 자연재난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 재산 피해에 따른 손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풍수해보험” 가입 및 지급을 포함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구민 생활안정에 이바지하고자 하는것으로 상위 법령에 위배되지 않으며 마포구 풍수해 피해 실태와 재정적 상황을 적절하게 반영하여 지원한다는 점에서 타당하다고 판단됨.
- 또한, 풍수해보험은 피해 인정 범위가 넓고 지원금액도 크기 때문에 실질적인 피해보상이 가능하다는 강점으로 인하여 2020년, 2021년 대비 풍수해보험 일반가입자의 수가 증가하고 있지만 취약지역 거주자나 및 기초생활수급자의 가입은 상대적으로 적다는 것을 볼 때,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 및 취약지역 거주자의 가입을 독려할 수 있도록 관련 부서는 홍보하여 향후 피해 발생시 신속한 복구에 도움이 되고 재정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구청의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기타 소수의견의 요지: 없음
8. 기타: 없음

[별표 1] 관계 법령

「풍수해 보험법」

[시행 2022. 4. 5.] [법률 제18686호, 2022. 1. 4., 일부개정]

제7조(국가 등의 재정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계약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이 보험목적물에 실제 거주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보험료의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 본문에 따른 보험료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지원하려는 보험목적물이 「농어업재해보험법」에 따른 농어업재해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풍수해 보험법 시행령」

[시행 2023. 8. 30.] [대통령령 제33692호, 2023. 8. 30., 타법개정]

제4조(보험료의 지원) ① 행정안전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할 때에는 그 지원금액을 보험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그 지원금액을 지방자치단체를 경유하여 보험사업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보험료 지원금액을 받으려는 보험사업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풍수해보험 가입현황서와 운영사업비 사용계획·결산서를 행정안전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자연재해대책법」

[시행 2023. 10. 12.] [법률 제19331호, 2023. 4. 11., 일부개정]

제3조(책무) ⑤ 시장[특별자치시장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 제1항에 따른 행정시의 시장(이하 “행정시장”이라 한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자연재해의 유형별로 지역 특성을 고려한 구체적인 대처 요령을 정하여 관계 공무원의 업무지침, 주민 교육·홍보자료 등으로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